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684
----------	------

발의연월일 : 2025. 3. 6.

발의자 : 이만희 · 서천호 · 구자근
김기웅 · 엄태영 · 김소희
김상훈 · 임종득 · 신동욱
권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은 농산물 수급 조절, 비축지원 및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로 세제지원 종료 시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

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00분의 50을 각각 <u>2025년 12월</u> <u>31일</u> 까지 경감한다. ② (생 략)	----- <u>2030년 12월</u> <u>31일</u> -----. ② (현행과 같음)
--	---